

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

기후에너지환경부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 통보

1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려 합니다.

공개	상호(명칭)		성명(대표자)	
대상자	주소(사업장)		(전화번호:)	
공개내용				
소명서 제출기한				

2. 공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보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/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/ 결재자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 - 일련번호 (시행일자)

접수 처리과명 - 일련번호 (접수일자)

우 주소

/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전자우편주소

/공개구분